

인사위원회운영규정

GENERAL MANAGEMENT SYSTEM PROCEDURE

문서번호	IMS-1015-00
개정차수	0
제/개정일자	2010.07.01
문서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관리본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관리본
관리번호	n/a (표준기안용)

(주)인터비즈시스템

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416, 16층(등촌동, 더 스카이밸리5차)

Tel 02-786-0071 / Fax 02-786-0075

<http://www.inter-biz.co.kr>

0 제/개정 이력

일자	개정차수	내용
2010년 07월 01일	0	인사위원회운영지침(A-510) 폐지에 따른 신규제정

공 백

1. 적용범위

이 규정은 (주)인터비즈시스템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

2. 목적

이 규정은 인사정책의 결정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및 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인사위원회의 구분

- a) 중앙 인사위원회
회사의 최고 인사위원회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권한을 위임한 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.
- b) 부문 인사위원회
부서 또는 부문별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로 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5. 인사위원회의 구성

5.1 중앙인사위원회

- a) 위원장: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임원
- b) 위원: 당연직인 경영관리 부서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4인 이상의 임직원
- c) 간사: 인사총무팀장

5.2 부문인사위원회

- a) 위원장: 해당 부문 또는 부서의 장
- b) 위원: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임직원
- c) 간사: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

6.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

6.1 중앙인사위원회

- a) 직원 인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

- b)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
- c) 직원의 포상 및 징계가 필요한 경우
- d) 부문인사위원회에 의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
- e)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6.2 부문인사위원회

- a) 회사와 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타 회사에 도급의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(이하 “현장직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포상 및 징계가 필요한 경우
- b) 회사와 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파견직원(이하 “파견직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포상 및 징계가 필요한 경우
- c) 현장직원 또는 파견직원에 대한 승진에 관한 사항
- d)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위임된 경우
- e)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
7. 소집 및 의결

7.1 소집통보

인사위원회 간사는 개최 5일 이전에 서면(전자우편 포함)으로 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회의 개최를 통보한다.

7.2 출석요구

- a) 필요한 경우,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- b) 인사위원회가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심의 5일전에 출석통지를 하였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7.3 성원 및 의결

- a)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의결권이 있다.
- b)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진술 및 항변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기회를 부여 받은 자가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진술 및 항변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단, 불참사유의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진술로 대체할 수 있다.

7.4 회의의 비공개 및 질서유지

- a) 인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b) 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장금지 및 퇴장을 명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.

7.5 간사

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“회의록 (IBF-1015-00-01)” 및 “인사위원회 의결서 (IBF-1015-00-02)”을 작성한다.

7.6 재심

.7.6.1 재심의 청구

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- a) 위원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된 사항에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다고 인정된 경우
- b) 부문인사위원회의 심의,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

7.6.2 재심 심의

- a) 재심의 경우에는 원심 인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1이상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.
- b) 재심기간 중에는 원심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.
단, 해고의 경우에는 재심기간 동안 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.

8. 기록 및 보관

양식번호	양 식 명	보관기간	보존년한	비고
IBF-1015-00-01	회의록	3년	5년	
IBF-1015-00-02	인사위원회의결서	3년	영구	